

법원공보

2014년 10월 15일 • 수요일 제1458호

| 법원행정처 |

목 차

규 칙	1771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1773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775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
	1836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
	183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내 규	1840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
예 규	1861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1863	
인 사	1867	
공 고	1868	
공지사항	1870	

규 칙

◎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58호 2014. 10. 2. 공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제1항 단서, 제2항, 제5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163조의2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등 법 제163조의2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판결서(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비실명 처리"란 판결서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당사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참가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지배인, 선정자, 증인, 감정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판결서 중에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밀이 적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복사제한)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으로서 판결서(해당 법원의 판결서와 그 상·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 및 다음 조항에서 같다)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결서의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하는 열람 및 복사(이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라 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법원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6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복사제한)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판결서 중에 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판결서 중 신청의 대상이 된 부분을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 및 복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7조(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서에 적혀 있는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에 대한 판결이 전부 확정된 후에야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하는 사람은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8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서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과 이를 보조하는 법원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59호 2014. 10. 2. 공포)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5.(생략)	2. ~5.(현행과 같음)

◎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 10. 2. 공포)

상업등기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① 법 제3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취하서, 등기참여조서, 첨부서면 그 밖의 부속서류(이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라 한다)의 열람 관련 업무
2. 인감 및 개인감(改印鑑)의 제출과 폐지신청 관련 업무
3. 인감카드 및 전자증명서의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신청 관련 업무
4. 사용자등록 관련 업무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업무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5조(회사 본점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본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의 대상이 되는 본점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기록한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해당란에 회사성립 연월일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③ 다른 등기소는 관할이 변경된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원인, 종전의 관할 등기소로부터 관할이 변경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다른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등기를 한 때에 그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지점등기기록에 지배인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이 변경된 본점등기기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다른 등기소는 관할이 변경된 본점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회사 지점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지점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지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 또는 본점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점등기기록 또는 본점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종전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여야 할 등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과 회사성립 연월일을 기록하여 관할변경의 대상인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지점에 관한 등기기록과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른 등기소에 이미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다른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지점과 그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를 통지하고, 해당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다른 등기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받은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존속하는 본점등기기록 또는 지점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상호등기기록, 무능력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지배인등기기록, 합자조합등기기록, 외국회사 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등기번호)

① 등기번호는 법 제4조의 관할 등기소에서 부여하고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등기번호는 등기부의 종류별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한다.

제9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등기관이 법 제9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 등기할 대상의 표시 및 등기의 목적
4.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10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지원, 등기부의 보관과 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의 출입자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과 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 제4항의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등기부 등

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①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다만, 외국회사 등기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같은 종류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의 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한다.

② 별지 제8호 양식 중 전환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이익참가부사채란, 그 밖의 법령에 정한 사채란은 발행하는 각 사채별로 편성한다.

제14조(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폐쇄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

고 관리한다.

② 법 제12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인감부)

①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정보는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다(이하 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인감부"라 한다).

② 인감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감부의 보관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기부(인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등기부등"이라 한다)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제64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제17조(등기부등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4조제2항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등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부등을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멸실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이동)

① 전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는 등기부등 및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그 장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소에서 보관하는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그 장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①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한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제21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22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2. 각종 통지부
1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①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기의 목적
2.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3.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4.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5.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

②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등기사건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 5년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3년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5년
12. 각종 통지부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 형태의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제4장 열람과 증명

제1절 총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에 대한 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무인발급기(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 및 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 중 그 성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28조(열람의 신청)

①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2.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적거나 이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열람의 방법)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종이 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5.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6.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
7.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증명서

②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을 기록한다.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부기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 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① 등기사항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의 설치와 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제35조(인감의 제출)

① 인감 또는 개인감(改印鑑)을 제출하는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한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改印)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에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사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2항의 방법 대신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고 지배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⑤ 인감신고 또는 개인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인감의 기록)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과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인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재날인 등의 요구)

등기신청서 등에 날인된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기 어려운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인감을 날인하게 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인감의 폐인 등)

①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인감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인감의 폐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폐인(廢印)신고서에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인감의 폐지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과 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39조(인감카드의 발급신청 등)

① 인감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③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카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인감카드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효력정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인감카드의 발급과 재발급신청 및 사건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매도용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에는 매수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후 등기소에서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③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한 권한 또는 인감증명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1조(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

① 인감증명서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과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매수자에 관한 제40조제1항 후단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수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할 때에는 별지 목록과 인감증명서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전자증명서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청산인은 제외한다) 및 지배인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람

제44조(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②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배인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영업주가 그 발급신청을 확인하는 뜻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5조(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의 심사)

① 등기관은 제36조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 또는 발급이 제한되는 제43조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②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인감제출자의 성명, 자격,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록한다)
2. 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4. 전자서명의 방식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전자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등기신청
2. 전자공탁
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

제47조(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①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8조(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전자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2.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신청 또는 등기촉탁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제49조(전자증명서의 변경발급 등)

① 변경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내용과 전자증명서에 기록되는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변경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전자증명서는 증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전자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전자증명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존의 전자증명서를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④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과 갱신 발급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1.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2. 제46조제3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3. 제47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
4. 변경등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5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1관 통칙

제51조(신청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다만, 신청인이 회사 또는 합자조합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신청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 본점 및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나. 신청인이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영업소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이나 상호와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업무집행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등기의 목적 및 사유
4. 등기할 사항
5.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
6. 다른 법률로 부과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의무사항
7.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 지점의 표시
8.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9. 등기신청수수료액
10. 신청연월일

11. 등기소의 표시

②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는 해당 등기기록에 따라 조합원의 가입연월일, 사원의 입사연월일, 업무집행자·임원·청산인의 취임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상법」 제514조의2(같은 법 제516조의8제2항으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상법」 제614조제2항·제3항 등에 의하여 외국에서 생긴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2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4.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② 법 제27조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소가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법 제27조의 소가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④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53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①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63조 및 제66조, 법 제71조의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등기신청의 조사)

① 등기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등기기록에 관한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 단서의 보정 요구는 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55조(등기의 방법)

① 등기를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기록 중 해당란에 등기사항,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고 제3조제3항의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및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변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방문신청”이라 한다)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제57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제58조(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

①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59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① 법 제19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로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등기기록을 부활하거나 법 제19조 또는 제2항에 따라 회사의 등기기록을 폐쇄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지점등기기록을 부활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제2관 방문신청

제60조(방문신청의 방법)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①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청서에 제60조제1항의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2.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제60조제2항의 간인을 대신한다.

제62조(신청서 등의 문자)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字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를 수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서면의 여백에 수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그 곳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원래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제63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방문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무원이 그 업무를 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

① 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반환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등기신청에 첨부된 위임장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2.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

② 대리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관 전자신청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그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와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1.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2. 개인 :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3. 관공서인 경우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제68조(사용자등록의 신청)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은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용자등록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송신하거나 관공서가 전자인증서를 송신한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제72조(2개 이상의 상호등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상호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각 상호를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7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의 승계인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속 또는 양도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 또는 영업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한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제74조(영업양도의 면책등기)

① 양수인이 「상법」 제42조제2항의 면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면책등기는 해당 상호의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영업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상호 등기기록 또는 양수인 회사의 등기기록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75조(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

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7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상법」 제2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7조(회사의 상호등기)

회사에 대하여는 제72조, 제73조 및 제7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8조(상호의 가등기기록)

「상법」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별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양식 중 해당 양식의 각 란에 해당하는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79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법 제41조의 공탁금액은 별표1과 같다.

제80조(상호의 가등기 등)

① 상호의 가등기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예정기간 연장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공탁한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설립하려는 회사의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예정기간 연장등기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중 발기인 또는 사원에 대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감증명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중 목적의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감증명과 정관

④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1조(공탁서 원본 확인)

등기관은 제80조제1항에 따라 첨부된 공탁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첨부된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을 확인한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2조(공탁금의 회수절차)

①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이 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의 청구에 따라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을 한 청구서 2통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탁법원, 공탁의 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연월일
4.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와 청구연월일

③ 등기관은 제2항의 청구서 중 1통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 등기소, 등기관의 표시 및 그 성명을 적은 후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3조(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때에는 등기관은 공탁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자 및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취지와 그 연월일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무능력자등기)

① 무능력자가 「상법」 제6조에 따른 무능력자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영업 종류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정대리인이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취소로 인한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보와 함께 무능력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5조(법정대리인등기)

① 법정대리인이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2. 후견인이 무능력자의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영업 종류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퇴임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제3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보와 신청인이 새로운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6조(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① 회사와 합자조합이 지배인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의 선임과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합자조합이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또는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7조(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2인 이상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각 지배인을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88조(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89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할 때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상호폐지의 등기
2. 회사의 상호와 합자조합의 명칭 외의 상호의 말소등기
3. 상호가등기의 말소등기
4.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5.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선임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6. 상호의 등기를 한 자,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90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조합계약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조합원 또는 어느 조합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1조(설립에 따른 등기)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3.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제92조(조합원 등의 등기)

① 업무집행권이 있는 조합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 그 조합원 또는 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3조(변경등기)

① 출자의 이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가입 또는 탈퇴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4조(해산등기)

① 조합계약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해산청구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청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5조(청산인등기)

① 조합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② 업무집행권이 있는 조합원의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 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업무집행권과 대리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08조 본문을 준용한다.

④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제97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8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지점등기기록 등의 처리)

① 법 제55조제1항의 본점이전등기신청은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함과 동시에 법 제55조제1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쇄하는 지점등기기록에 지배인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③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점이 있는 경우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116조제1항제1호의 등기를 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여야 한다.

제100조(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①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 제29조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법 제29조에 해당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②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법 제56조제2항의 통지와 함께 제1항의 상호변경등기의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5조의 본점이전등기신청이 접수된 후에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1조(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제58조는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지배인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지점에 관한 등기
2.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하는 본점이전등기
3.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소멸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합병등기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② 법 제58조의 신청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는 신청서에,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02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①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지점이라고 덧붙여 기록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도 기록한다.

제103조(변경등기)

① 출자의 이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원의 입사 또는 퇴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대표사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제105조(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등의 등기)

① 사원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의 등기는 그 사원의 퇴사 등기를 할 때에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사원에 대하여 제명의 등기를 하거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청산인에 대하여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6조(해산등기)

①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7조(청산인등기)

① 업무집행사원을 청산인으로 하는 청산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과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관한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청산인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47조에 따른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회사계속등기)

① 회사 해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94조에 따른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 판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10조(청산종결등기)

① 「상법」 제247조제5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264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1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상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제111조 각 호의 정보

제113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1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정보
3.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① 법 제54조와 제57조 및 법 제65조제1항의 등기사항(회사성립의 연월일은 제외한다)은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62조제1항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①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지점이전등기(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점폐지등기(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청산종결의 등기
5. 합병, 합병무효나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본점등기기록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등기관은 그 회사의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제5절 합자회사의 등기

제11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19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어느 사원이나 업무집행자 또는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0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업무집행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4. 대표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5.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제121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업무집행자 또는 대표업무집행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2조(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①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87조의36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갈음하여 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3조(해산등기)

사원이 없게 되어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4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3.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제12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호, 제120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4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129조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3. 제152조제2호 및 제4호의 정보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5조제2항,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제2항 중 "사원"은 "업무집행자"로 본다.

② 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08조 본문을 준용한다.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총주주 또는 그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9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
6.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7. 제6호의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8.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9. 창립총회의사록
10.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12.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1조(일시이사 등의 등기)

①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386조제2항 등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등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그 이사 등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5.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6.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7. 제6호의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13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제13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보

제135조(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제13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청구를 증명하는 정보

제136조(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상법」 제351조(같은 법 제5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주가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거나 사채권자가 사채의 전환을 청구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회사가 주식을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상법」 제346조제3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의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7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8조(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① 주식의 병합(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0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상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

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1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주가 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주식의 상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회사가 주식을 상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상법」 제34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자기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11조제2호의 정보(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제143조(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

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납입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사채의 전부 상환 등으로 인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36조제2항의 사채의 발행, 변경, 말소등기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5조(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46조(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에 관한 정보
2.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360조의7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
6. 「상법」 제360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7. 「상법」 제360조의9제2항 또는 「상법」 제360조의10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8.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관한 정보
9. 「상법」 제360조의10제5항에 따른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정보

제147조(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2.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3.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상법」 제360조의18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360조의19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6. 제129조제1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제148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 「상법」 제52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527조의2제2항 또는 「상법」 제527조의3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6.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관한 정보
7. 「상법」 제527조의3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정보
8.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9. 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 제112조제2호의 정보
3.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
4.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법 제70조제1항의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의 주주총회의사록
3.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5.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
6.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외에 다른 출자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2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의 정보
7.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8. 제148조제8호의 정보(단순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제149조제1호의 정보

제151조(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법 제70조제2항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3. 분할되는 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5. 분할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6. 제148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보

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정보
3.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5.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2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6.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5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제153조(결의부존재 등의 등기)

①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와 신주발행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와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0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13조를 준용한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등기사항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11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제155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6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4. 감사를 둔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5.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제157조(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 또는 상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158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9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제160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호, 제156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59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1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129조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3. 제152조제2호 및 제4호의 정보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자본금 증가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법 제74조에 해당하는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164조(영업소 변경등기)

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변경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내용의 영업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는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외국회사 영업소등기에 관하여는 제116조제1항을 준용한다.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영업소 폐쇄의 등기(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청산종결의 등기

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0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167조(경정등기신청)

①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할 때에는 경정등기의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제1항의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등기의 경정)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제169조(말소등기신청)

① 법 제77조제2호에 해당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1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0조(등기의 말소)

①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80조 또는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장 이의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법 제83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72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87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1.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다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과 같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4조(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88조에 따른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제7장 보칙

제175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촉탁이 신탁업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뜻의 등기
2. 촉탁이 은행사업을 겸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일 때에는 목적변경의 등기
3. 촉탁이 신탁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산의 등기

제176조(과태사항의 통지)
등기관은 그 직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7조(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등기는 이 규칙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종류주식과 합자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종전의 기록은 이 규칙에 따른 기록 방식으로 이기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상업등기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②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31조, 제132조,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0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13조, 제115조제2항 및 제154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88조 및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68조제5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46조"로 한다.

③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상업등기법」 제1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6조"로 한다.

④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5조, 제35조,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57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를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로 한다.

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과"를 "「상업등기법」 제5조와"로 한다.

⑥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을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발급을 예약한 경우"를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합자조합의 설립등기"를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로 한다.
제5조의6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7 중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8 중 "「상업등기법」 제12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를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업등기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상호의 가등기의 공탁금액

공탁금액 / 상호의 가등기의 종류	상호의 가등기 신청시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 신청시
	예정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예정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의 가등기	200만원	200만원에다가 초과되는 예정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연장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상법」 제2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의 가등기	150만원	150만원에다가 초과되는 예정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70만원을 추가한 금액	연장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70만원

[별지 제1호] (상호)

등기번호	

상 호	. .
	. .
	. .
	. .

영 업 소

영 업 의 종 류

상호사용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기 타 사 항

등기기록의 개설 연월일

[별지 제2호] (무능력자)

등기번호	

무능력의 사유	. .

무능력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허락받은 영업의 종류

기타사항

등기기록의 개설 연월일

[별지 제3호] (법정대리인)

등기번호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무능력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대리할 영업의 종류

기타사항

등기기록의 개설 연월일

[별지 제4호] (지배인)

등기번호	

지배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영업주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지배인을 둔 장소

기타사항

등기기록의 개설 연월일

[별지 제5호] (합자조합)

등기번호	

명 칭	. .
	. .
	. .
	. .

주된 영업소	. .
	. .
	. .
	. .

목 적

조합원·청산인에 관한 사항

기 타 사 항

지배인에 관한 사항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별지 제6호]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또는 해당 외국법인)

등기번호	
등기번호	

상 호	. .
	. .
	. .
	. .
본 점	. .
	. .
	. .
	. .

목 적

사원 · 청산인에 관한 사항

기 타 사 항

지점에 관한 사항

지배인에 관한 사항

회사성립연월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별지 제7호] (유한책임회사 또는 해당 외국법인)

등기번호	
등기번호	

상 호	. .
	. .
	. .
	. .
본 점	. .
	. .
	. .
	. .
공고방법	. .
	. .
	. .
	. .
자본금의 액	. .
	. .
	. .
	. .

목 적

업무집행자·청산인에 관한 사항

기 타 사 항

지점에 관한 사항
지배인에 관한 사항
회사성립연월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별지 제8호] (주식회사 또는 해당 외국법인)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 호	. .
	. .
	. .
	. .

본 점	. .
	. .
	. .
	. .

공고방법	. .
	. .
	. .
	. .

1 주의 금액	. .
	. .
	.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 .
	. .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총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 .
		. .
		. .
		. .

목 적

임원에 관한 사항

종류주식의 내용

기 타 사 항

지점에 관한 사항

지배인에 관한 사항

전 환 사 채

신 주 인 수 권 부 사 채
이 익 참 가 부 사 채
그 밖 의 법 령 에 정 한 사 채
주 식 매 수 선 택 권
회사성립연월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별지 제9호] (유한회사 또는 해당 외국법인)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 호	. .
	. .
	. .
	. .
본 점	. .
	. .
	. .
	. .

출자 1좌의 금액	. .
	. .
	. .
	. .

자본금의 총액	. .
	. .
	. .
	. .

목 적

임원에 관한 사항

기 타 사 항

지점에 관한 사항

지배인에 관한 사항

회사성립연월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별지 제10호]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등기번호	

상 호	. .
	. .
	. .
	. .
본점이 소재할 장소	. .
	. .
	. .
	. .

목 적

발기인 전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기 타 사 항

등기기록의 개설 연월일

[별지 제11호]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등기번호	

상호	. .
	. .
	. .
	. .
본점	. .
	. .
	. .
	. .

목 적

변경에 의하여 정하여질 상호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기 타 사 항

등기기록의 개설 연월일

[별지 제12호]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등기번호	

상호	. .
	. .
	. .
	. .
본점	. .
	. .
	. .
	. .

변경에 의하여 정하여질 목적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기 타 사 항

등기기록의 개설 연월일

[별지 제13호]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등기번호	

상호	. .
	. .
	. .
	. .
본점	. .
	. .
	. .
	. .

변경에 의하여 정하여질 상호

변경에 의하여 정하여질 목적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기 타 사 항

등기기록의 개설 연월일

[별지 제14호]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등기번호	

상호	. .
	. .
	. .
	. .
본점	. .
	. .
	. .
	. .

목 적

본점을 이전할 장소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기 타 사 항

등기기록의 개설 연월일

◎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61호 2014. 10. 2. 공포)

집행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원란 중 “15”를 “16”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8”을 “10”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9”를 “11”로, 서울북부지방법원 “9”를 “11”로, 서울서부지방법원 “7”을 “9”로, 의정부지방법원 “17”을 “25”로, 같은 법원 고양지원 “13”을 “19”로, 인천지방법원 “25”를 “33”으로, 같은 법원 부천지원 “9”를 “13”으로, 수원지방법원 “18”을 “25”로, 같은 법원 성남지원 “9”를 “12”로, 같은 법원 여주지원 “5”를 “7”로, 같은 법원 평택지원 “5”를 “7”로, 같은 법원 안산지원 “10”을 “13”으로, 같은 법원 안양지원 “6”을 “9”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를 “3”으로, 같은 법원 서산지원 “6”을 “7”로, 광주지방법원 “14”를 “12”로, 제주지방법원 “6”을 “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집행관 인원표의 개정규정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명, 서울북부지방법원 1명, 의정부지방법원 2명, 같은 법원 고양지원 3명, 인천지방법원 2명, 같은 법원 부천지원 2명, 수원지방법원 2명, 같은 법원 성남지원 1명, 같은 법원 평택지원 1명, 같은 법원 안산지원 2명, 같은 법원 안양지원 1명에 관한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1명, 서울북부지방법원 1명, 서울서부지방법원 1명, 의정부지방법원 4명, 같은 법원 고양지원 2명, 인천지방법원 3명, 같은 법원 부천지원 1명, 수원지방법원 3명, 같은 법원 성남지원 1명, 같은 법원 여주지원 2명, 같은 법원 평택지원 1명, 같은 법원 안양지원 1명,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명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집행관인원표

법 원	인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15
서울동부지방법원	8
서울남부지방법원	9
서울북부지방법원	9
서울서부지방법원	7
의정부지방법원	17
고양지원	13
인천지방법원	25
부천지원	9
수원지방법원	18
성남지원	9
여주지원	5
평택지원	5
안산지원	10
안양지원	6
∫	∫
공주지원	2
서산지원	6
∫	∫
광주지방법원	14
∫	∫
제주지방법원	6
계	378

〔별표〕 집행관인원표

법 원	인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16
서울동부지방법원	10
서울남부지방법원	11
서울북부지방법원	11
서울서부지방법원	9
의정부지방법원	25
고양지원	19
인천지방법원	33
부천지원	13
수원지방법원	25
성남지원	12
여주지원	7
평택지원	7
안산지원	13
안양지원	9
∫	∫
공주지원	3
서산지원	7
∫	∫
광주지방법원	12
∫	∫
제주지방법원	5
계	43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62호 2014. 10. 2. 공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이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여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이혼의사 등의 확인)	제74조(이혼의사 등의 확인)
①, ② (생 략)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이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여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신 설 〉	

내 규

◎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451호 2014. 9. 29. 결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통사항, 별표 2-2. 기획제1심의관, 별표 2-3. 기획제2심의관, 별표 3. 사법지원실, 별표 5-1. 인력운영심의관, 별표 6-1. 사법등기심의관, 별표 6-3. 부동산등기과, 별표 8. 재판사무국, 별표 9-2. 윤리감사제2심의관, 별표 10. 인사총괄심의관, 별표 12.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통사항

번호	업무내용			대법원장	처장	전결자		
						차장	실·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
1	사법정책 및 주요업무계획	기본계획, 중요정책		○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계획·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	외부기관				○	
			내부기관					○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시달·통보·회보 및 기 지시사항, 조회사항의 독촉·확인(중요도에 따라)					○	○
		추진상황 및 추진실적 보고					○	
2	타기관과의 업무협조	정책적 사항			○			
		사무적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3	대법관회의 상정의안(대법원규칙 제정, 개정 포함)			○				
4	각종 내규, 예규	전국법원 적용	정책적 사항, 중요사항	○				
			사무적 사항		○			
		처내 적용	중요사항, 일반사항		○			
			경미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무적 사항 (중요도에 따라)			○	○	
5	법규의 해석 및 질의 응답	신규의 중요사항(중요도에 따라)			○	○		
		경미사항, 전례에 의한 사항(중요도에 따라)					○	○
		관계부처에 이첩(개인질의에 한함)						○
6	민원사무처리	극히 중요한 사항		○				
		중요사항 및 외부기관 이첩사항(중요도에 따라)			○	○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이첩, 중간회보, 보완지시						○
		사실확인, 사실증명, 증명서 발급 등						○
7	각종 정기보고 및 통계의 처리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				○		
		업무처리에 기본이 되는 사항					○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는 사항						○
8	각종 위원회의 운영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위원의 위촉·해촉(중요도에 따라)		○	○	○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	○			
		일반사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휴가승인	대법관	해외여행 및 1주일 이상의 휴가		○			
			위 사항 이외의 경우		○			
		각급법원장	해외여행 및 1주일 이상의 휴가		○			
			위 사항 이외의 경우		○			
		수석 및 선임재판연구관, 실·국장, 공보관, 윤리감사관, 안전관리관 (재판연구관은 수석재판연구관이 전결)				○		
		대법원·법원행정처 소속	기타 법관 및 3급 이하 4급 이상 법원공무원				○	
			5급 이하 법원공무원					○

번호	업무내용				대법원장	처장	전결자		
							차장	실·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
10	출장허가	국외출장	법관	대법관	○				
				각급법원장 이하 법관		○			
			일반직	5급이상		○			
				6급이하			○		
				기능직				○	
		국내출장	4급 이상(법관 포함)				○		
			5급 이하					○	
11	직원의 조퇴, 외출허가 및 시간외 근무명령	실·국장					○		
		4급 이상 (법관 포함)						○	
		5급 이하							○
12	사무분장조정	새로운 특수업무 분장				○	○		
		실·국간					○		
		실·국내 각 과(담당관)간						○	
		과(담당관) 내 사무분담							○
13	문서의 보존 및 폐기							○	
14	간행물 발간	특히 중요한 간행물			○				
		중요 간행물	발간 및 배포계획			○			
			배포					○	
		기타 비정기 간행물	발간 및 배포계획				○		
			배포						○
		정기 간행물	발간 및 배포계획					○	
			배포						○
	* 특히 중요한 간행물 :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 * 중요간행물 : 각종판례집, 대법원예규집(일반행정편은 제외), 사법연감, 법원실무제요, 기타 이에 준하는 간행물(추록포함) * 기타비정기간행물 : 각종 교육자료, 홍보자료 등 비정기간행물 * 정기간행물 : 법원통계월보								
15	경비지출이 소요되는 방침결정(다만 결정되는 방침의 내용에 따라 상급자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1억원 이상		○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8,000만원 미만				○	
16	물품관리								○

2-2. 기획제1심의관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결자		
					차장	실장	심의관
1	사법행정,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집행계획의 수립,총괄,조정 (중요도에 따라)		○	○			
2	국회, 행정부처 기타 대외 관계 업무 (중요도에 따라)			○		○	
3	대법원의 중요행사 및 회의 기획	개최여부결정 등 주요 사항 (중요도에 따라)	○	○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세부사항 시행(중요도에 따라)				○	○
4	예산요구 주요사업계획	자료수집(중요도에 따라)				○	○
		성안		○			
		책자의 발간, 배부				○	
5	국회보고용 '법원현황' 작성	자료수집					○
		성안				○	
		책자의 발간, 배부					○
6	사법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 지침 사항	○				
		세부사항				○	
7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 지침 사항	○				
		세부사항				○	
8	법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규정의 제정, 개폐		○			
		특히 중요한 간행물의 발간(Ⅰ)	○				
		특히 중요한 간행물의 발간(Ⅱ)		○			
	* 특히 중요한 간행물 Ⅰ :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 * 특히 중요한 간행물 Ⅱ : 사법논집, 사법연구자료, 재판자료집, 기타 이에 준하는 간행물						
9	사법시험 합격인원 의견통보			○			
10	재판사무감사 지원 및 조정업무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 조정		○			
		주요감사사항 제공 등 지원업무 (중요도에 따라)				○	○
		감사 기초자료 제공 등 세부사항 시행					○
11	각급법원 재판관련 연구회 및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업무	예산지원 등 중요사항 결정		○			
		연구성과 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평가				○	
		예산지급 등 세부사항 집행					○

2-3. 기획제2심의관

일련번호	업무내용			대법원장	처장	전결자		
						차장	실장	심의관
1	법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건의 및 의견회신 등	건의사항		○				
		의견회신사항(중요도에 따라)			○	○	○	
2	대법원규칙의 제정, 개폐	성안		○				
		공포			○			
		관보게재의뢰					○	
		각급법원 등에의 송부						○
3	대법원내규의 제정, 개폐	제정·개폐(중요도에 따라)		○	○			
		각급법원 등에의 송부						○
4	대법원행정예규·법원행정처내규의 제정, 개폐	제정·개폐(중요도에 따라)			○	○		
		각급법원 등에의 송부						○
5	법원 및 법원직원 등에 대한 소송	소송개시보고, 결과보고(중요도에 따라)			○	○	○	○
		소송진행보고(중요도에 따라)					○	○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지정				○	
			검찰청에 대한 소송사무통보					○
6	법관의 국내연수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대상자 선정(중요도에 따라)			○		○	
		집행 및 세부사항 시행					○	
7	연임법관 연수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대상자 선정			○			
		비국비 해외여행 허가(법원의 재원에 의한 해외여행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급법원장		○			
			기타법관				○	
8	법원공무원의 국내연수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대상자선정	5급 이상(중요도에 따라)		○		○	
			6급 이하(중요도에 따라)			○	○	
			기능직				○	
		일반행정사항(희망자 파악, 세부일정 변경 등)(중요도에 따라)					○	○
		교육결과 통보						○
9	사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지원	발생보고(중요도에 따라)		○	○	○	○	○
		대응방안 수립(중요도에 따라)		○	○	○	○	○
		집행 및 세부사항 시행					○	

3. 사법지원실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관
1	연구계획	기본계획수립(중요도에 따라)	○	○	○		
		세부시행사항 (중요도에 따라)			○	○	
2	법조내외에 대한 의견조사	시행계획			○		
		세부실시사항 (중요도에 따라)				○	○
3	외부인사 초청 공청회	시행계획(중요도에 따라)		○	○		
		세부실시사항				○	
4	연구결과보고(중요도에 따라)			○	○		
5	보고서 발간계획					○	
6	간행물 배포 (중요도에 따라)					○	○
7	각급법원 재판사무 지원	장기미제현황보고		○			
		재판예규 제정·개폐		○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보고				○	
		감정인 명단 보고					○
		법원보관금 현황보고				○	

5-1. 인력운영심의관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관
1	임용	임용일반	5급 또는 5급 상당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임용추천포함)			○		
		정규공무원임용	5급			○		
			6급 이하				○	
		호봉재획정	5급			○		
			6급 이하				○	
		각급법원 등의 인사발령 보고	5급				○	
			6급 이하					○
		교육훈련	5급			○		
			5급에 대하여 사전결재가 있는 경우 및 6급 이하(중요도에 따라)			○	○	
		파견	5급(중요도에 따라)		○	○		
			5급에 대하여 사전결재가 있는 경우 및 6급 이하(중요도에 따라)			○	○	
2	승급 대우	승급, 대우	5급 이하				○	
3	공무원전력조회						○	
4	평정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위원 지명			○			
		종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보고	종합승진후보자명부 (5~8급, 정원통합직렬)			○		
			통합승진후보자명부(7급)			○		
			승진후보자명부(현5급 이하)				○	
		각급법원 등의 승진후보자명부, 근무평정서,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평정표 등 송부						○
		성과연봉의 결정, 승인	5급 이하 임기제공무원			○		
		각급법원 성과상여금 지급 결과보고						○
5	여성인력에 관한 사항(중요도에 따라)					○	○	
6	징계 등 처분 등재 및 기록 말소 보고		5급				○	
			6급 이하					○
7	인사기록카드 등재 및 기록사항 변경신청 (중요도에 따라)						○	○
8	법원공무원 사망보고		5급 이하				○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관
9	공무원 단체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법원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지침 및 정책수립	관련규정정비			○		
		공무원단체 현황파악 및 분석	현황파악 및 분석					○
			대응조치				○	
		공무원 노사관계교육 및 연수	기본계획 수립			○		
			교육준비					○
			교육 및 연수 실시 및 결과보고				○	
		단체교섭	계획수립 및 교섭준비				○	
			교섭 대응안 마련			○		
			교섭 대응안 확정 및 결과보고		○			
		간담회 등 대화창구	계획수립				○	
			회의준비 및 대책마련				○	
			간담회 결과보고			○		
		직장협의회 및 법원공무원 노동조합	설립보고, 건의사항보고			○		
			반기별 보고				○	

6-1. 사법등기심의관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국장	심의관
1	계획수립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			
		전산화·정보화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변경			○			
		등기특별회계 관련 사항 계획 수립과 변경			○			
		주요전산기기 구입, 운용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제안평가가 수반되는 사업)			○			
2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제안 평가가 수반되는 사업)			○			
		연단위 계약 관련			○			
		공사 계약관련	예정가격 1억원 이상		○			
			예정가격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예정가격 8천만원 미만				○	
		용역 계약관련	예정가격 8천만원 이상		○			
			예정가격 5,0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		
			예정가격 5,000만원 미만				○	
		대금지급	선금, 기성금, 잔금				○	
			대금지급 관련 부수절차					○
3	물품의 제조·구매 등 계약 및 대금지급	예정가격 8천만원 이상			○			
		예정가격 5,0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		
		예정가격 5,000만원 미만					○	
4	물품관리	물품 관리					○	
		물품 출납						○
		물품 검사검수					○	
5	프로젝트 운영	프로젝트 수행관련 국내 출장					○	
		검수요원 신규투입 승인, 검수필 통보					○	
		외주업체의 프로젝트 관련 월별업무보고					○	
		외주업체의 프로젝트 관련 업무보고						○
		외주업체의 인력투입 계획 승인, 산출물 시정 요구 및 승인						○
		입력지침처리						○

일련번호	업무내용		대법원장	처장	전결자		
					차장	국장	심의관
6	행정	전산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통보				○	
		전산처리등기소 지정, 관할 내 등·초본발급대상 등기소 지정과 관보게재 의뢰				○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의 설치 등				○	
7	공탁사무	공탁물보관자 지정	○				
		공탁관 재정보증보험 체결			○		
		공탁금 보관업무 취급약정 체결			○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요청		○			
		공탁금관리위원회 위원위촉 및 해임		○			
		공탁금관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공탁금관리위원회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안 승인	○				
		공탁금관리위원회 사업실적 및 결산서 승인	○				
		공탁 선례 송부				○	
8	상업등기(민법법인, 특수법인, 선박등기 포함)사무에 관한 보고	등기사무에 관한 각종 통계보고				○	
		관할의 위임		○			
		등기사무의 정지	○				
		등기부멸실 보고	○				
		등기부와 부속서류의 멸실우려시 처리방법 보고		○			
		상업등기에 관한 신법령 · 선례 송부				○	

6-3. 부동산등기과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국장	과장
1	부동산등기	등기사무에 관한 각종 통계보고				○	
		관할의 위임		○			
		등기사무의 정지	○				
		등기부멸실 보고		○			
		등기부와 부속서류의 멸실우려시 처리방법 보고		○			
2	등기특별회계의 집행계획	8,0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		
		5,000만원 미만				○	
3	법무사 감독사무	자격인정,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속변경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를 포함한다) 및 등록취소명령			○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 인가 및 총회결의 취소		○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법무사협회의 감독사무			○		
		등록거부, 등록취소(사망, 폐업, 제외), 징계처분 등 보고				○	
		대한법무사협회 총회결의 등 보고				○	
		지방법무사회의 회칙 인가 및 총회결의 취소				○	
		지방법원장의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와 법무사합동법인 포함) 및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업무검열 결과 보고				○	
		법무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보고				○	
		등록, 소속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보고, 사망·폐업으로 인한 등록취소보고					○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에 대한 감독결과 보고				○	
		공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승인 신청			○		
		자격증재교부신청서의 처리					○
		등록전연수교육 일정 및 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승인			○		
		연수교육 실시 내용 보고					○
4	법무사 시험	합격자 결정		○			
		결과 통보				○	
		세부시행사항				○	
5	등기·법무사에 관한 신법령 통보					○	

8. 재판사무국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결자		
							차장	국장	과장
1	대법원 재판사무	사건배당	사건배당부					○ (수석재판연구관)	
			재배당요구부		○				
		기록공람	접수기록						○
			완결기록						○
		처리상황보고	일일보고(일계표)					○	
			월별보고	상고사건 법관별처리 및 대법원 사건현황표, 상고사건 법관별 파기건수표	○				
				상고사건법관별처리 및 배당일람표				○	
		판결선고결과보고(중요사건)			○				
		판결초고수령 및 송달상황보고	판결초고수령					○	
			판결정본송달상황						○
		국선변호인	중요사항					○	
			경미사항(선임·보수지급)						○
		선거소송 등에 관한 통지						○	
		명령·규칙의 위헌판결 등의 통보						○	
2	하급법원 재판사무 감독	하급법원중요사건보고(중요도에 따라)			○	○	○	○	
		재판사무 지적사항 및 모범사항 통보					○		
3	판결확정통보(선거법위반사건, 군사법원 사건)							○	
4	재판관련민원의 처리(중요도에 따라)						○	○	
5	「법원에 바란다」에 관한 사항								○
6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기본지침사항(중요도에 따라)				○	○		
		일반사항(중요도에 따라)						○	○
		정보공개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중요도에 따라)					○	○	
7	재판사무 및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민원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중요도에 따라)				○	○	○	
		민원처리, 질의회신(중요도에 따라)					○	○	

9-2. 윤리감사제2심의관

일련번호	업무내용			대법원장	처장	전결자		
						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1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평가결과			○			
2	직원 등의 진정 및 비위사항	일반직원(중요도에 따라)		○	○	○	○	○
		법무사, 집행관(중요도에 따라)				○	○	○
		언론 보도 관련 (중요도에 따라)		○	○	○	○	○
3	감사에 관한 사항	정기일반사무감사	기본계획수립		○			
			감사결과보고		○			
			조치결과보고		○			
		수시감사	기본계획수립[(월보),(중요도에 따라)]		○	○	○	
			감사결과보고[(월보),(중요도에 따라)]		○	○	○	
			조치결과보고(중요도에 따라)		○	○	○	
		특별기강감사에 관한 사항(중요도에 따라)			○	○	○	
		기획감사(중요도에 따라)			○	○	○	
4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직원 등 비위사실현황 및 진정접수처리현황 보고(월보)					○	
		각급법원 자체감사 실적보고(월보)					○	
5	징계에 관한 사항	징계에 관한 일반사항		○	○	○	○	
		징계결과 통보					○	
6	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에 따른 겸직허가(중요도에 따라)				○	○		

10. 인사총괄심의관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심의관
1	대법관 임명 제청	대법관 임명 제청			○			
		대법관 임명 제청 준비 절차(중요도에 따라)				○	○	○
2	법관의 임용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중요도에 따라)			○	○		
		인사발령	신규임용, 연임, 전보, 정직, 면직		○			
			겸임(중요도에 따라)		○	○		
			휴직, 복직(휴직 및 복직의 종류에 따라)		○	○		
			파견	발령권자의 사전 결재가 없는 경우	○			
				발령권자의 사전 결재가 있는 경우 (중요도에 따라)			○	○
			각종 교육명령(중요도에 따라)				○	○
		각종 경과 보고(중요도에 따라)			○	○	○	
3	법관의 승급 등	승급여부 결정				○		
		호봉의 획정 및 재획정(호봉 획정 사유에 따라, 중요도에 따라)			○	○	○	
4	법관의 업무지정 및 사무분담 등	사법행정사무 관장 법관 지정, 법관의 직무대리 허가, 비부장재판장 승인(중요도에 따라)			○	○		
		법관의 업무지정 및 사무분담과 관련한 보고 및 통보 (중요도에 따라)					○	○
5	각종위원회 위촉	법원내부 (인사발령)	발령권자의 사전 결재가 없는 경우(중요도에 따라)		○	○	○	
			발령권자의 사전 결재가 있는 경우(중요도에 따라)				○	○
		법원외부 (추천지명 등)	사전허가(추천·지명권자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		○	○	○	
			추천·지명(추천·지명권자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		○	○	○	
		통보						○
6	근 무 평 정	의뢰 및 절차진행						○
		보고			○			
7	법관 및 법원직원 해외연수	기본계획수립 및 대상자 선정·허가			○			
		법관 연수기관 지정				○		
		연수법관 선정 절차, 각종 보고 및 해외연수 진행					○	○
8	법관 상훈	기본계획수립			○			
		포상추천				○		
9	비법관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원 채용	기본계획수립 및 채용계약 체결			○	○		
		기본계획의 집행 및 선발 관련 보고(중요도에 따라)				○	○	○
10	기타 서무 업무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관련 기타 일반 행정사무(중요도에 따라)				○	○	○

12.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공보관	심의관
1	공보활동에 관한 계획수립	공보업무의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일반사항(중요도에 따라)		○	○		
		세부시행사항				○	
2	공보자료의 작성·수집·관리 및 배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언론기관과의 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사법정책, 재판, 일반 사법행정의 홍보	중요사항		○			
		일반사항(중요도에 따라)		○	○		
		경미사항				○	
5	각급법원의 홍보사항 조정	기본지침사항			○		
		세부시행사항(중요도에 따라)				○	○
6	법원회보 및 법원공보 행정편의 편찬·발간				○		
7	타기관의 홍보의뢰 및 업무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1. 공통사항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
1 ∫ 8	〈생략〉							
9	휴가 승인	대법관	해외여행 및 1주일 이상의 휴가	○				
			위 사항 이외의 경우		○			
		각급 법원장	해외여행 및 1주일 이상의 휴가		○			
			위 사항 이외의 경우			○		
		수석 및 선임재판연구관, 실·국장, 공보관, 윤리감사관, 안전관리관 (재판연구관은 수석재판연구관이 전결)				○		
		대법원·법원행정처 소속	기타 법관 및 3급 이하 4급 이상 법원공무원				○	
			5급 이하 법원공무원					○
10 ∫ 14	〈생략〉							
15	경비지출이 소요되는 방침결정(다만 결정되는 방침의 내용에 따라 상급자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8,0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		
		5,000만원 미만					○	
16	〈생략〉							

별표2-2. 기획제1심의관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관
1 ∫ 6	〈생략〉					
7	〈신설〉					
7 ∫ 10	〈생략〉					

개 정 안

별표1. 공통사항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
1 ∫ 8	〈현행과 같음〉							
9	휴가 승인	대법관	해외여행 및 1주일 이상의 휴가		○			
			위 사항 이외의 경우		○			
		각급법원장	해외여행 및 1주일 이상의 휴가		○			
			위 사항 이외의 경우		○			
		수석 및 선임재판연구관, 실·국장, 공보관, 윤리감사관, 안전관리관 (재판연구관은 수석재판연구관이 전결)				○		
		대법원·법원행정처 소속	기타 법관 및 3급 이하 4급 이상 법원공무원				○	
			5급 이하 법원공무원					○
10 ∫ 14	〈현행과 같음〉							
15	경비지출이 소요되는 방침결정(다만 결정되는 방침의 내용에 따라 상급자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1억원 이상			○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8,000만원 미만					○	
16	〈현행과 같음〉							

별표2-2. 기획제1심의관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관
1 ∫ 6	〈현행과 같음〉						
7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 지침 사항	○				
		세부사항				○	
8 ∫ 11	〈현행 7~10과 같음〉						

현 행

별표2-3. 기획제2심의관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관
1	〈생략〉						
2	대법원규칙의 제정, 개폐	성안	○				
		공포	○				
		관보게재의뢰				○	
		각급법원 등에의 송부					○
3 ∫ 9	〈생략〉						

별표3. 사법지원실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관
1 ∫ 2	〈생략〉						
3	외부인사 초청 공청회	시행계획		○			
		세부실시사항				○	
4	연구결과보고(중요도에 따라)		○	○	○		
5 ∫ 7	〈생략〉						

개 정 안

별표2-3. 기획제2심의관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관
1	〈현행과 같음〉						
2	대법원규칙의 제정, 개폐	성안	○				
		공포		○			
		관보게재의뢰				○	
		각급법원 등에의 송부					○
3 ∫ 9	〈현행과 같음〉						

별표3. 사법지원실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관
1 ∫ 2	〈생략〉						
3	외부인사 초청 공청회	시행계획(중요도에 따라)		○	○		
		세부실시사항				○	
4	연구결과보고(중요도에 따라)			○	○		
5 ∫ 7	〈생략〉						

현 행

별표5-1. 인력운영심의관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관
1	임용	임용일반(별정직공무원은 제외)	6급 이하, 기능직, 청원경찰			○		
		별정직공무원 임용	5급 상당		○			
			6급 상당 이하			○		
		정규공무원임용	5급			○		
			6급 이하, 기능직				○	
		임용추천	6급 이하, 기능직			○		
		호봉재획정	5급			○		
			6급 이하, 기능직				○	
		각급법원 등의 인사발령 보고	5급				○	
			6급 이하, 기능직					○
		교육훈련	5급			○		
			5급에 대하여 사전결재가 있는 경우 및 6급 이하(중요도에 따라)			○	○	
			기능직				○	
		파견	5급(중요도에 따라)		○	○		
			5급에 대하여 사전결재가 있는 경우 및 6급 이하(중요도에 따라)			○	○	
			기능직				○	
2	승급 대우	승급, 대우	5급 이하, 기능직				○	
3	〈생략〉							
4	평정	〈신설〉						
		종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보고	종합승진후보자명부(5~8급, 정원통합직렬)			○		
			통합승진후보자명부(7급)			○		
			승진후보자명부(현5급 이하)				○	
		각급법원 등의 승진후보자명부, 근무평정서,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평정표 등 송부						○
		성과연봉의 결정, 승인	5급 이하 계약직공무원			○		
		각급법원 성과상여금 지급 결과보고						○
5	〈생략〉							
6	징계 등 처분 등재 및 기록 말소 보고		5급				○	
			6급 이하, 기능직					○
7 ∫ 9	〈생략〉							

개 정 안

별표5-1. 인력운영심의관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관
1	임용	임용일반	5급 또는 5급 상당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임용추천포함)			○		
		정규공무원 임용	5급			○		
			6급 이하				○	
		호봉재획정	5급			○		
			6급 이하				○	
		각급법원 등의 인사발령 보고	5급				○	
			6급 이하					○
		교육훈련	5급			○		
			5급에 대하여 사전결재가 있는 경우 및 6급 이하(중요도에 따라)			○	○	
		파견	5급(중요도에 따라)		○	○		
			5급에 대하여 사전결재가 있는 경우 및 6급 이하(중요도에 따라)			○	○	
2	승급 대우	승급, 대우	5급 이하				○	
3	〈현행과 같음〉							
4	평정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위원 지명			○			
		종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보고	종합승진후보자명부(5~8급, 정원통합직렬)			○		
			통합승진후보자명부(7급)			○		
			승진후보자명부(현5급 이하)				○	
		각급법원 등의 승진후보자명부, 근무평정서,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평정표 등 송부						○
		성과연봉의 결정, 승인	5급 이하 **임기제**공무원			○		
		각급법원 성과상여금 지급 결과보고						○
5	〈현행과 같음〉							
6	징계 등 처분 등재 및 기록 말소 보고		5급				○	
			6급 이하					○
7 ∫ 9	〈현행과 같음〉							

현 행

6-1. 사법등기심의관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국장	심의관
1 ∫ 6	〈생략〉						
7	공탁사무	공탁물보관자 지정	○				
		공탁관 재정보증보험 체결		○			
		공탁금 보관업무 취급약정 체결		○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요청		○			
		공탁금관리위원회 위원위촉 및 해임		○			
		공탁금관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공탁금관리위원회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안 승인	○				
		공탁금관리위원회 사업실적 및 결산서 승인	○				
		공탁 선례 송부				○	
8	〈생략〉						

5-3. 부동산등기과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국장	과장
1	부동산등기	등기사무에 관한 각종 통계보고				○	
		관할의 위임		○			
		등기사무의 정지	○				
		등기부멸실 보고	○				
		등기부와 부속서류의 멸실우려시 처리방법 보고		○			
2	〈생략〉						
3	법무사감독사무	자격인정,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속변경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를 포함한다) 및 등록취소명령			○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 인가 및 총회결의 취소		○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법무사협회의 감독사무			○		
		등록거부, 등록취소(사망, 폐업, 제외), 징계처분 등 보고				○	
		대한법무사협회 총회결의 등 보고				○	
		지방법무사회의 회칙 인가 및 총회결의 취소				○	
		지방법원장의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와 법무사합동법인 포함) 및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업무검열 결과 보고				○	
		법무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보고				○	
		등록, 소속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보고, 사망·폐업으로 인한 등록취소보고					○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에 대한 감독결과 보고				○	
		공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승인 신청		○			
		자격증재교부신청서의 처리					○
		등록전연수교육 일정 및 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승인			○		
		연수교육 실시 내용 보고					○
4 ∫ 5	〈생략〉						

개 정 안

6-1. 사법등기심의관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국장	심의관
1 ∫ 6	〈현행과 같음〉						
7	공탁사무	공탁물보관자 지정	○				
		공탁관 재정보증보험 체결			○		
		공탁금 보관업무 취급약정 체결			○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요청		○			
		공탁금관리위원회 위원위촉 및 해임		○			
		공탁금관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공탁금관리위원회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안 승인	○				
		공탁금관리위원회 사업실적 및 결산서 승인	○				
		공탁 선례 송부				○	
8	〈현행과 같음〉						

5-3. 부동산등기과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국장	과장
1	부동산등기	등기사무에 관한 각종 통계보고				○	
		관할의 위임		○			
		등기사무의 정지	○				
		등기부멸실 보고		○			
		등기부와 부속서류의 멸실우려시 처리방법 보고		○			
2	〈현행과 같음〉						
3	법무사감독사무	자격인정,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속변경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를 포함한다) 및 등록취소명령			○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 인가 및 총회결의 취소		○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법무사협회의 감독사무			○		
		등록거부, 등록취소(사망, 폐업, 제외), 징계처분 등 보고				○	
		대한법무사협회 총회결의 등 보고				○	
		지방법무사회의 회칙 인가 및 총회결의 취소				○	
		지방법원장의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와 법무사합동법인 포함) 및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업무검열 결과 보고				○	
		법무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보고				○	
		등록, 소속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보고, 사망·폐업으로 인한 등록취소보고					○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에 대한 감독결과 보고				○	
		공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승인 신청			○		
		자격증재교부신청서의 처리					○
		등록전연수교육 일정 및 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승인			○		
		연수교육 실시 내용 보고					○
4 ∫ 5	〈현행과 같음〉						

현 행

8. 재판사무국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국장	과장
1 ∫ 4	〈생략〉						
5	「법원행정처장과의 대화」에 관한 사항					○	
6	〈생략〉						
7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기본지침사항(중요도에 따라)		○	○		
		일반사항(중요도에 따라)				○	○
		정보공개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요도에 따라)		○	○	○	
8	〈생략〉						

9-2.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1 ∫ 5	〈생략〉					
6	〈신설〉					

10. 인사총괄심의관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심의관
1	〈생략〉							
2	법관의 임용	인사발령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중요도에 따라)		○	○		
			신규임용, 연임, 전보, 겸임, 정직, 면직		○			
			휴직, 복직(휴직 및 복직의 종류에 따라)		○	○		
			파견	발령권자의 사전 결재가 없는 경우	○			
				발령권자의 사전 결재가 있는 경우 (중요도에 따라)			○	○
			각종 교육명령(중요도에 따라)				○	○
		각종 경과 보고(중요도에 따라)			○	○	○	
3 ∫ 10	〈생략〉							

개 정 안

8. 재판사무국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국장	과장
1 ∫ 4	〈현행과 같음〉						
5	〈삭제〉						
5	〈현행 6과 같음〉						
6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기본지침사항(중요도에 따라)		○	○		
		일반사항(중요도에 따라)				○	○
		정보공개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요도에 따라)			○	○	
7	〈현행 8과 같음〉						

9-2.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1 ∫ 5	〈현행과 같음〉					
6	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에 따른 겸직허가 (중요도에 따라)		○	○		

10. 인사총괄심의관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심의관
1	〈현행과 같음〉							
2	법관의 임용	인사발령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중요도에 따라)		○	○		
			신규임용, 연임, 전보, 정직, 면직		○			
			겸임(중요도에 따라)		○	○		
			휴직, 복직(휴직 및 복직의 종류에 따라)		○	○		
			파견	발령권자의 사전 결재가 없는 경우	○			
				발령권자의 사전 결재가 있는 경우 (중요도에 따라)			○	○
			각종 교육명령(중요도에 따라)				○	○
		각종 경과 보고(중요도에 따라)			○	○	○	
3 ∫ 10	〈현행과 같음〉							

현 행

12.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공보관	심의관
1	공보활동에 관한 계획수립	공보업무의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일반사항(중요도에 따라)		○	○		
		세부시행사항				○	
2 ∫ 3	〈생략〉						
4	사법정책, 재판, 일반 사법행정의 홍보	중요사항	○				
		일반사항(중요도에 따라)		○	○		
		경미사항				○	
5 ∫ 7	〈생략〉						

개 정 안

12.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공보관	심의관
1	공보활동에 관한 계획수립	공보업무의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일반사항(중요도에 따라)		○	○		
		세부시행사항				○	
2 ∫ 3	〈현행과 같음〉						
4	사법정책, 재판, 일반 사법행정의 홍보	중요사항		○			
		일반사항(중요도에 따라)		○	○		
		경미사항				○	
5 ∫ 7	〈현행과 같음〉						

예 규

◎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025호 2014. 9. 19. 결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년조사관 또는 가정보호조사관을"을 "소년조사관·가정보호조사관 또는 아동보호조사관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순회조사관”이란 가정법원의 본원과 지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들을 순회하면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 또는 가정보호조사관을 말한다.	2. “순회조사관”이란 가정법원의 본원과 지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들을 순회하면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가정보호조사관 또는 아동보호조사관을 말한다.
제5조(지방법원·가정법원 지원의 가정법원 관장사항과 사무분담)	제5조(지방법원·가정법원 지원의 가정법원 관장사항과 사무분담)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2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신법령 목록 (2014. 9. 16~ 9. 30.)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조약】				
조약제2203호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2014. 9. 19	18350	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56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9. 18	18349	4
대통령령제25607호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560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560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5610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561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5612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25613호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2561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25615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25616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25617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제25618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25619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9. 24	18353	4
대통령령제25620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	12
대통령령제25621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7
대통령령제25622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25623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25624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2562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9. 24	18353	30
대통령령제25626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4
대통령령제2562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25628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8
대통령령제2562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	〃	40
대통령령제25630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2
대통령령제2563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5
대통령령제25632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	〃	46
대통령령제256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5
대통령령제25634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6
대통령령제25635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8
대통령령제25636호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1
대통령령제25637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3
대통령령제25638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4
대통령령제2563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5
대통령령제255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76
대통령령제2564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9. 26	18355	4
대통령령제2564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25642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5643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9. 30	18357	6
대통령령제25644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2564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총리령】

총리령제1095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9. 18	18349	25
총리령제1097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9. 24	18353	77

【부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18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9. 16	18347	4
해양수산부령제9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9. 17	18348	3
국토교통부령제123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환경부령제168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8
환경부령제169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8
환경부령제170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8
환경부령제17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중 정정	〃	〃	8
농림축산식품부령제107호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9. 18	18349	25
해양수산부령제98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7
법무부령제825호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	2014. 9. 19.	18350	10
보건복지부령제26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보건복지부령제261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
보건복지부령제26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
국토교통부령제12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
해양수산부령제99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
산업통상자원부령제8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9. 22	18351	4
환경부령제573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환경부령제574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9. 25	18354	4
환경부령제575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고용노동부령제10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고용노동부령제10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
농림축산식품부령제10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
농림축산식품부령제110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2
해양수산부령제100호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5
법무부령제826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14. 9. 26	18355	10

문화체육관광부령제182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9. 26	18355	45
보건복지부령제263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6
여성가족부령제59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	59
보건복지부령제264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9. 29	18356	4
교육부령제47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기획재정부령제43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9. 30	18357	15
기획재정부령제43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
농림축산식품부령제111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
해양수산부령제101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
환경부령제57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
고용노동부령제10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4
고용노동부령제11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9
고용노동부령제11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41
국토교통부령제125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2
국토교통부령제126호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	〃	45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4. 9. 1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하림(李夏林)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4. 10. 14.부터 2015. 2. 17.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혜승(崔惠丞)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4. 10. 14.부터 2015. 2. 13.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권미연(權美蓮)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4. 10. 27.부터 2015. 2. 13.까지 휴직을 명함. 끝.

공 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 – 159호

2014년도 하반기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공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하반기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15.

법 원 행 정 처 장

1. 계획인원 : ○○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 선정 시 결정)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가. 신청대상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7조의2 해당자

나. 명예퇴직 예정일 : 2014. 12. 31.(수)

다. 신청기간 : 2014. 11. 4.(화) ~ 11. 7.(금)

라.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대상자 심사결정

가. 법원행정처장은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

나. 대상자의 제한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 대상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6)「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4. 대상자 결정 통지 :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함.

5. 수당지급

가. 수당지급일

–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 예정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명예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나. 수당지급 절차

– 수당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급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명예퇴직하는 자로서「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될 수 있음.

나. 소속기관의 장 및 법원행정처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명예퇴직원」을 작성·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과「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의함.

라. 정기명예퇴직일(6월 말, 12월 말) 기준 10일 이내에 수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이 정기인사일로 조정될 수 있음.

공지사항

◎ 9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9월분 법률도서(119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48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글로벌 경제변화를 꿰뚫는 법학자의 시선) 경제위기와 치유의 법학 / 김철	한국학술정보	2014	
영미법 개론 : 2014/ Ⅱ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4	
(Beck'sches Formularbuch) Zivil-, Wirtschafts-und Unternehmensrecht : Deutsch-Englisch / Walz, Robert	C.H.Beck	2014	
(Die) ökonomische Analyse des Rechts : Entwicklung und Perspektive einer interdisziplinären Wissenschaft : Festschrift für Michael Adams / Curti, Henning	PL Academic Research	2013	
Juristische Fremdwörter, Fachausdrücke und Abkürzungen : sowie die gängigsten Registerzeichen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 der Staatsanwaltschaft, der Arbeitsgerichtbarkeit sowie der wichtigsten Registerzeichen der Verwaltungs-, Sozial-und Finanzgerichtsbarkei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Simon, Jürgen Meyer, Dieter Meyer, Jens	Vahlen	2012	
Rechtswörterbuch / Creifelds, Carl Weber, Klaus Cassardt, Gunnar	C.H.Beck	2014	
Ungerechtes Recht / Muβig, Ulrike	Mohr Siebeck	2013	

[제법]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금융거래법 : 2014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4	
저작권법 : 2014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4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조세법 총론 : 2014/ Ⅰ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4	
해고와 임금 : 2014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4	
(Der) Interessenausgleich zwischen Eigentümern und Urhebern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von Religionsgemeinschaften als Eigentümer urheberrechtlich geschützter Werke / Diller, Manuel	PL Academic Research	2013	
(Der) Schutz des geistigen Eigentums im Internet / Leible, Stefan	Mohr Siebeck	2012	
(Die) "Angemessenheit" im Urheberrech t : prozedurale und materielle Wege zu ihrer Bestimmung : INTERGU-Tagung 2012 / Riesenhuber, Karl	Mohr	2013	
(The) Future of Indirect taxation : Recent trends in VAT and GST systems around the world / Ecker, Thomas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Geistiges Eigentum : Vorschriftensammlung zum gewerblichen Rechtsschutz, Urheberrecht und Wettbewerbsrecht / Mächtel, Florian	Mohr Siebeck	2014	
Internationale Sozialstandards im nationalen Recht : eine Untersuchung am Beispiel des Systems sozialer Sicherheit in Südafrika / Hofmann, Claudia	Mohr Siebeck	2013	
Klimaschutz als Rechtsproblem : Steuerung durch Preisinstrumente vor dem Hintergrund einer parallelen Evolution von Klimaschutzregimes verschiedener Staaten / Ismer, Roland	Mohr Siebeck	2014	
Kommunaler Klimaschutz durch erneuerbare Energien / Kahl, Wolfgang	Mohr Siebeck	2013	
Produktrückruf und Regress / Schmidt, Mareike	Mohr Siebeck	2013	
Rechtsmissbrauch und Verwirkung bei Widerspruch gegen den Übergang des Arbeitsverhältnisses nach § 613a BGB / Hofmann, Joël Philipp	PL Academic Research	2013	
Urheber-und Urhebervertragsrecht / Schack, Haimo	Mohr Siebeck	2013	
Vielfalt oder Chaos - aktuelle Probleme und Entwicklungen im deutschen und europ ischen Arbeitsrecht : 2. Assistententagung im Arbeitsrecht 2012 in Mainz / Uffmann, Katharina	Mohr Siebeck	2013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Der) Einzelne im europäischen Verwaltungsrecht : die institutionelle Ausdifferenzierung der Verwaltungsorganisation der Europäischen Union in individueller Perspektive / Saurer, Johannes	Mohr Siebeck	2014	
Drohnen und das Recht : völker-und verfassungsrechtliche Fragen automatisierter und autonomer Kriegführung / Frau, Robert	Mohr Siebeck	2014	
Entscheidungen des EuGH : kommentierte Studienauswahl / Pechstein, Matthias	Mohr Siebeck	2014	
Europäisches Kapitalmarktrecht / Veil, Rüdiger	Mohr Siebeck	2014	
Europarecht / Haratsch, Andreas	Mohr Siebeck	2014	
Europarecht : Textsammlung / Pechstein, Matthias	Mohr Siebeck	2014	
EU-Vertragsrecht / Riesenhuber, Karl	Mohr Siebeck	2013	
Gezielte Tötungen : Terrorismusbekämpfung und die neuen Feinde der Menschheit / Höfer, Martin F	Mohr Siebeck	2013	
Internationales Arbeitsrecht : deutsches und europäisches Arbeitskollisionsrecht / Deinert, Olaf	Mohr Siebeck	2013	
Internationales Vertragsrecht : Rom I-VO, CISG, CMR, Fact Ü / Ferrari, Franco Kieninger, Eva M Mankowski, Peter Otte, Karsten Saenger, Ingo Staudinger, Ansgar	C.H. Beck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 고학수	박영사	2014	
"Gesetzgeber" und Rechtsanwendung : Entstehung und Auslegungsfähigkeit von Normen / Baldus, Christian	Mohr Siebeck	2013	
Öffentliches Recht : ein Basislehrbuch zum Staatsrecht, Verwaltungsrecht und Europarecht mit Übungsfällen / Detterbeck, Steffen	Vahlen	2013	
Grundgesetz : kommentar/ Bd. Ⅰ : Artikel 1-19 / Dreier, Horst	Mohr Siebeck	2013	
Grundkurs Öffentliches Recht : Staats-und Verwaltungsrecht / Sodan, Helge	C.H.Beck	2014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Grundriss Verfassungsrecht / Bethge, Herbert	Vahlen	2011	
Grundzüge einer Verfassungslehr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Volkmann, Uwe	Mohr Siebeck	2013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행정구제법 : 2014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4	
(Das) Recht auf Anhörung im europäischen Verwaltungsverfahren / Nöhmer, Sabrina	Mohr Siebeck	2013	
Öffentliches Haftungsrecht : Ökonomisierung – Europäisierung – Dogmatisierung / Hartmann, Bernd J	Mohr Siebeck	2013	
Informationsverwaltungsrecht : zur kognitiven Dimension der rechtlichen Steuerung von Verwaltungsentscheidungen / Augsberg, Ino	Mohr	2014	
Polizei-und Ordnungsrecht / Gusy, Christoph	Mohr Siebeck	2014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경제범죄론 : 2014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4	
신종범죄론 : 2014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4	
형사판례 요약집 : 2014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4	
Gesetzlichkeitsprinzip im Strafrecht : ein deutsch-chinesischer Vergleich / Hilgendorf, Eric	Mohr Siebeck	2013	
Grundkurs StPO / Volk, Klaus	C.H.Beck	2013	
Kriminologie – Kriminalpolitik – Strafrecht : Festschrift für Hans-Jürgen Kerner zum 70. Geburtstag / Boers, Klaus Feltes, Thomas Kinzig, Jörg Sherman, Larry Streng, Franz Trüg, Gerson Kerner, Hans-Jürgen	Mohr Siebeck	2013	
Strafgesetzbuch mit Nebengesetzen / Dreher, Eduard	C.H.Beck	2014	
Strafgesetzbuch : Kommentar / Dreher, Eduard	C.H.Beck	2014	
Verantwortung,ReversibilitätundVerschulden / Winiger,Bénédict	Mohr Siebeck	2013	

[상법]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Der) Sanktionsdurchgriff im Unternehmensverbund / Eisele, Jörg	Mohr Siebeck	2014	
(Die) Feststellung der Zahlungsunfähigkeit von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Dittmer, Jana	Mohr Siebeck	2013	
Einheit und Vielheit im Unternehmensrecht : Festschrift für Uwe Blaurock zum 70. Geburtstag / Jung, Peter Lamprecht, Philipp Schmidt-Kessel, Martin Blasek, Katrin Blaurock, Uwe	Mohr Siebeck	2013	
Gesellschaftsrecht / Grunewald, Barbara	Mohr Siebeck	2014	
Handelsgesetzbuch : Kommentar/ Bd.1 : §§ 1-342e / Boujong, Karlheinz	C.H.Beck	2014	
Handelsrecht : ein Studienbuch / Canaris, Claus-Wilhelm	C.H.Beck	2006	
Unternehmensrecht in der Reformdiskussion / Veil, Rüdiger	Mohr Siebeck	2013	
Verzicht, Vergleich und sonstige Haftungsbeschränkungen im Gesellschaftsrecht / Wigand, Martin	Peter Lang	2012	

[사법,소송절차,법무]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연구 : 2014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 : 성낙인의 법과사회 칼럼집 / 성낙인	법률저널	2014	
민사집행법 : 2014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4	
법원실무제요/ [2-1] : 민사집행(I) : 집행총론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4	
법원실무제요/ [2-2] : 민사집행(II) : 부동산집행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4	
법원실무제요/ [2-3] : 민사집행(III) : 동산·채권 등 집행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4	
법원실무제요/ [2-4] : 민사집행(IV) : 보전처분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4	
법원실무제요/ 비송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4	
절망의 재판소 : 30년 경력 판사, 일본 사법계에 칼을 겨누다 / 세기 히로시	사과나무	2014	
韓國法曹人大觀 : 2013年/ 상권 : ㄱ~ㅎ /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韓國法曹人大觀 : 2013年/ 상권 : ㄱ~ㅎ /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韓國法曹人大觀 : 2013年/ 하권 : ㅈ~ㅎ, 자료/색인 /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Die) Beschränkung der Erbenhaftung in der Insolvenz / Fischinger, Philipp S	Mohr Siebeck	2013	
Class arbitration : von der Gruppenklage zum Gruppenschiedsverfahren und zurück? Eine Untersuchung zum U.S.-amerikanischen Schiedsverfahrensrecht / Orgel, Marc	Mohr Siebeck	2013	
Eine Analyse / Jerg, Marcus	Peter Lang Academic Research	2013	
Einführung in das Insolvenzrecht / Bork, Reinhard	Mohr Siebeck	2014	
Insolvenzordnung : InsO mit EUInsVO / Schmidt, Karsten	C. H. Beck	2013	
Zwangsvollstreckungsrecht / Brox, Hans	Vahlen	2014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변론의 기술 : 구술변론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2014	
증인신문기술 : 2014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4	
(Der) Schutz der schwächeren Partei in der Mediation / Wendenburg, Felix	Mohr Siebeck	2014	
(Die) Streitsache im deutschen und englischen Zivilverfahren / Albrecht, Hendrik	Mohr Siebeck	2013	
(Die) Zukunft des Zivilprozesses : Freiburger Symposion am 27. April 2013 anlässlich des 70. Geburtstages von Rolf Stürner / Bruns, Alexander	Mohr Siebeck	2014	
Zivilprozessordnung : FamFG ; Verfahren in Familiensachen ; GVG, Einführungsgesetze, EU-Zivilverfahrensrecht : Kommentar / Thomas, Heinz	C.H.Beck	2014	
Zivilprozessordnung : mit FamFG, GVG und anderen Nebengesetzen / Baumbach, Adolf	C.H.Beck	2014	
Zivilprozessrecht / Grunsky, Wolfgang	Vahlen	2014	
Zivilprozessrecht / Zeiss, Walter	Mohr Siebeck	2014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특수·강력수사론 : 2014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4	

[민법]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재산분할까지 / 김동근	진원사	2014	
(Das) Lösungsrecht nach gutgläubigem Erwerb : ein Mittel zum Ausgleich von Ausfallrisiko und Sachzuordnung, unter vergleichender Berücksichtigung des deutschen und französischen Rechts / Winter, Matthias	Mohr Siebeck	2014	
(Der) mehrseitige Vertrag : Grundstrukturen, Vertragsschluss, Leistungsstörungen / Zwanzger, Michael	Mohr Siebeck	2013	
AGB-Recht : Kommentar / Wolf, Manfred	C.H.Beck	2013	
Allgemeine Einkaufsbedingungen / Westphalen, Friedrich von	C.H.Beck	2014	
Allgemeine Verkaufsbedingungen / Westphalen, Friedrich von	C.H.Beck	2012	
Allgemeines Schuldrecht / Brox, Hans	C.H.Beck	2014	
Anfechtungsgesetz(AnfG) : Gesetz über die Anfechtung von Rechtshandlungen eines Schuldners auβerhalb des Insolvenzverfahrens / Huber, Michael	C.H.Beck	2006	
Bürgerliches Gesetzbuch / Palandt, Otto	C.H. Beck	2014	
Bürgerliches Gesetzbuch : mit Allgemeinem Gleichbehandlungsgesetz (Auszug) / Jauernig, Othmar	C.H. Beck	2014	
Bürgerliches Recht : eine nach Anspruchsgrundlagen geordnete Darstellung zur Examensvorbereitung / Medicus, Dieter	Vahlen	2013	
Besonderes Schuldrecht / Brox, Hans	C.H.Beck	2014	
BGB, Allgemeiner Teil / Köhler, Helmut	C.H.Beck	2011	
BGB. ein Lehrbuch mit Fällen und Kontrollfragen / Leipold, Dieter	Mohr Siebeck	2013	
Deliktsrecht / Kötz, Hein	Vahlen	2013	
Erbrecht : ein Lehrbuch mit Fällen und Kontrollfragen / Leipold, Dieter	Mohr Siebeck	2014	
Familienrecht / Muscheler, Karlheinz	Vahlen	2013	

서명 및 저자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Grundkurs BGB : eine Darstellung zur Vermittlung von Grundlagenwissen im bürgerlichen Recht mit Fällen und Fragen zur Lern-und Verständniskontrolle sowie mit Übungsklausuren / Musielak, Hans-Joachim	C.H.Beck	2013	
Handbuch des Kaufrechts : der Kaufvertrag nach bürgerlichem Recht, Handelsrecht und UN-Kaufrecht / Eckert, Hans-Werner	C.H.Beck	2014	
Kaufrecht : einschliesslich Abzahlungsgeschäfte,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 Eigentumsvorbehalt, Factoring, Fernabsatzverträge und elektronischer Geschäftsverkehr, finanzierte Kaufverträge, Haustürgeschäfte, Leasing, Pool-Vereinbarungen, Produzentenhaftung, Teilzeit-Wohnrechteverträge / Reinicke, Dietrich	Heymann	2008	
Kernstrukturen des Sachenrechts / Herrmann, Elke	Mohr Siebeck	2013	
Münchener Anwalts-Handbuch Mietrecht/ Hannemann, Thomas	C.H.Beck	2014	
Nebeneinander und Einheit im bürgerlichen Recht : zur Gliederung des Rechtsstoffs im Bürgerlichen Gesetzbuch / Boente, Walter	Mohr Siebeck	2013	
Sachenrecht / Vieweg, Klaus	Vahlen	2013	
Schuldrecht BT : Lernbuch, Strukturen, Übersichten / Wörlen, Rainer	Vahlen	2013	
Schuldrecht/ Ⅰ : Allgemeiner Teil / Köhler, Helmut	C.H.Beck	2014	
Schuldrecht/ Ⅱ : Besonderer Teil / Köhler, Helmut	C.H.Beck	2014	
Schuldrecht : Besonderer Teil / Looschelders, Dirk	Vahlen	2014	
Vertragliche Schuldverhältnisse / Oechsler, Jürgen	Mohr Siebeck	2013	
Zehn Jahre Schuldrechtsmodernisierung / Artz, Markus	Mohr Siebeck	2014	

•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1	거래가격 통권 525호(2014. 10)	대한건설협회	월간
2	노동법률 통권 280호(2014. 09)	中央經濟社	월간
3	문학사상 2014년 10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4	司法行政 55권 9호(통권 제64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5	商事法硏究 33권 2호(통권 제83호)	韓國商事法學會	반년간
6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85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7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8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8	속보삼일총서 통권 제1287호+별책부록(2014. 09)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o.1297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298-1299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시사저널 No.1300	(주)독립신문사	주간
12	시사저널 No.1301	(주)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14년 10월	동아일보사	월간
14	월간조선 2014년 10월	조선일보사	월간
15	이코노미스트 No.125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6	이코노미스트 No.125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7	이코노미스트 No.125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8	이코노미스트 No.1254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종합물가정보 통권 527호 I, II호+부록(2014년 10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20	주간조선 No.2321	조선일보사	주간
21	주간조선 No.2322	조선일보사	주간
22	주간조선 No.2323	조선일보사	주간
23	창작과 권리 76호 (2014년 가을호)	세창출판사	계간
24	출판저널 Vol.464(2014. 09)	출판저널	월간
25	土地公法硏究 66輯	韓國土地公法學會	반년간
26	土地公法硏究 제94회 학술대회	韓國土地公法學會	부정기
27	土地公法硏究 제95회 학술대회	韓國土地公法學會	부정기
28	土地公法硏究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요람	韓國土地公法學會	부정기
29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권 3호(2014. 0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3호(2014. 08)	한국문헌정보학회	반년간
31	現代文學 (2014년 10월)	현대문학사	월간
32	Legal Times Vol.74(2014. 09)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刑事辯護 No.79(2014. Autumn)	現代人文社	계간
2	(旬刊)商事法務 2038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2039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2040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2041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6	(月刊)登記情報 54卷 8號(通卷 633號)	テイハン	월간
7	國家學會雜誌 127卷 7·8號	有斐閣	격월간
8	國際商事法務 42卷 7號(通卷 625號)	國際商事法務研究所	월간
9	國際商事法務 42卷 8號(通卷 626號)	國際商事法務研究所	월간
10	金融·商事判例 No.1445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11	金融·商事判例 No.1446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12	金融·商事判例 No.1447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13	金融法務事情 1998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	순간
14	金融法務事情 1999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	순간
15	金融法務事情 2000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	순간
16	勞動法律旬報 1819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7	勞動法律旬報 1820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8	勞動法律旬報 182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9	勞動法律旬報 182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0	勞動判例 No.1092	産勞總合研究所	반월간
21	勞動判例 No.1093	産勞總合研究所	반월간
22	登記研究 796號(2014. 06)	テイハン	월간
23	登記研究 797號(2014. 07)	テイハン	월간
24	文藝春秋 2014年 9月號	文藝春秋	월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5	民商法雜誌 149卷 3號	有斐閣	월간
26	發明 111卷 8號(2014. 08)	發明協會	월간
27	犯罪學雜誌 80卷 4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28	法律時報 86卷 9號(通卷 1076號)	日本評論社	월간
29	法律時報 86卷10號(通卷 1077號)	日本評論社	월간
30	法律時報 別冊 No.49	日本評論社	월간
31	法律判例文獻情報 通卷 428號	第一法規	월간
32	法律のひろば 67卷 8號	ぎょうせい	월간
33	法律のひろば 67卷 9號	ぎょうせい	월간
34	法曹時報 66卷 7號	法曹會	월간
35	法曹時報 66卷 8號	法曹會	월간
36	法學 78卷 3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37	法學教室 407號(2014. 08)	有斐閣	월간
38	法學教室 408號(2014. 09)	有斐閣	월간
39	法學論叢 175卷 1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0	法學新報 121卷 1·2號	有斐閣	월간
41	法學研究 87卷 6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2	法學協會雜誌 131卷 6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3	法學協會雜誌 131卷 7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4	法學セミナー 59卷 9號(通卷 716號)	日本評論社	월간
45	事業再生と債權管理 28卷 2號(通卷 145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	계간
46	損害保險研究 76卷 2號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 所	계간
47	銀行法務 21 58卷 9號(通卷 775號)	經濟法令研究會	월간
48	銀行法務 21 58卷 10號(通卷 776號)	經濟法令研究會	월간
49	自治研究 90卷 8號 (通卷 1086號)	第一法規	월간
50	自治研究 90卷 9號 (通卷 1087號)	第一法規	월간
51	租稅研究 第777號(2014.07)	日本租稅研究協會	월간
52	阪大法學 64卷 2號(通卷 290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53	判例時報 2222號	判例時報社	순간
54	判例時報 2223號	判例時報社	순간
55	判例時報 2224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判例時報 2225號	判例時報社	순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57	判例時報 2226號	判例時報社	순간
58	判例地方自治 383號(2014. 08)	ぎょうせい	월간
59	判例タイムズ 1401號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60	判例タイムズ 1402號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61	判例タイムズ 別冊 No.38	判例タイムズ社	부정기
62	海事法研究會誌 224號(2014. 08)	日本海運集會所	격월간
63	戸籍 900號	テイハン	월간
64	NBL 1029號	商事法務	반월간
65	NBL 1030號	商事法務	반월간
66	NBL 1031號	商事法務	반월간
67	アメリカ法 2013 -2	東京大學法學部	반년간
68	ケース研究 통권 320호(2014년 2호)	家庭事件研究會	계간
69	コピライト Vol.54 No.640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70	コピライト Vol.54 No.641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71	ジュリスト 1470號	有斐閣	월간
72	ジュリスト 1471號	有斐閣	월간
73	ジュリスト 別冊(刑法判例百選Ⅰ[第7版]) No.220	有斐閣	부정기
74	ジュリスト 別冊(刑法判例百選II[第7版]) No.221	有斐閣	부정기
75	ジュリスト 增刊 公正取引 審決判例精選 (2014. 07)	有斐閣	부정기
76	パテント 67卷 8號(通卷 779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77	パテント 67卷 9號(通卷 780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1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3 Part.2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2	(The)international lawyer Vol.47 No.3 (2013 Winter)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3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9 Heft.16	Manz	반월간
4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9 Heft.17	Manz	반월간
5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86	Thomson Reuters	격주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6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87	Thomson Reuters	격주간
7	American Journal of Law & Medicine Vol.40 No.1	The American Society of Law, Medicine & Ethics	계간
8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Band.139 Heft.2	J. C. B. Mohr	계간
9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4 Hft.1/2	J. C. B. Mohr	격월간
10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4 Hft.3	J. C. B. Mohr	격월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9 Nr.35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9 Nr.36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9 Nr.3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8 No.2173	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8 No.2174(index포함)	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8 No.2175	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8 No.2176	BNA	주간
18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8 No.2177	BNA	주간
19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2013 Edition 3	Council of Europe	연3회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41(20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1	Bundesgesetzblatt Teil I Nr.42(20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2014)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Computer und Recht 2014, Heft.8	Otto Schmidt	월간
24	Computer und Recht 2014, Issue.4	Otto Schmidt	월간
25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2 Hft.9-10	Gieseking	월간
26	Der Spiegel 2014, Nr.35	Spiegel	주간
27	Der Spiegel 2014, Nr.36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4, Nr.37	Spiegel	주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29	Der Staat Bd.53 Hft.2	Duncker & Humblot	계간
30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2 Nr.9	Carl Heymanns	월간
31	(Die)Öffentliche Verwaltung Jahrg.67 Hft.17	Kohlhammer	반월간
32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9 Hft.16	Verlag Dr.Otto Schmidt Köln	격주간
3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9 Hft.17	Verlag Dr.Otto Schmidt Köln	격주간
34	Die Praxis 2014, Heft.7	Helbing & Lichtenhahn	월간
35	Die Praxis 2014, Heft.8	Helbing & Lichtenhahn	월간
36	DISCOVER 2014 SEPTEMBER	Kalmbach publishing co.	연10회
37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29 Hft.17	Carl Heymanns	반월간
38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5 issue.6	Sweet & Maxwell	연8회
39	Europä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1 hft.13-16	N.P.Engel Verlag	반월간
40	Europarecht Jahrg.49 Hft.4	Nomos	격월간
41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5 Heft.16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ie und Recht Jahrg.25 Hft.9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43	Family Court Review Vol.52 No.3(2014. 7)	blackwell publishing	계간
44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1 Hft.16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45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1 Hft.17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46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6 Nr.9	Wiley-VCH	월간
47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6 Heft.16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8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4, Nr.8	Stollfuss	월간
49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63 part.3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계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32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33	BNA	주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1 No.34	BNA	주간
53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3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4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2 No.1(2014. 3)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5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2 No.3(2014. 7)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56	Judicature Vol.98 No.1	AJS	격월간
57	Jura : Juristische Ausbildung Bd.36 Hft.9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58	Juristen Zeitung Jahrg.69 Nr.15/16	J. C. B. Mohr	반월간
59	Juristen Zeitung Jahrg.69 Nr.17	J. C. B. Mohr	반월간
60	Juristische Rundschau 2014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61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4 Heft.9	C.H.Beck	월간
62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4. Heft.8	C.H.Beck	월간
63	Kritische Justiz Jahrg.47 Hft.3	Nomos	계간
64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97 Hft.2	Nomos	계간
65	La semaine juridique : entreprise et affaires 2014, N.31-34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 notariale et immobilière 2014, N.31-35+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67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28	dalloz	주간
68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4, N.29	dalloz	주간
69	Le Droit Ouvrier N.794(2014)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0	Lloyd's law reports 2014, Part.6	Lloyd's of London	연10회
71	Lloyd's law reports 2014, Part.7	Lloyd's of London	연10회
72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68 Hft.16	Otto Schmidt	반월간
7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33+Spezial.16	C. H. Beck	주간
7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34	C. H. Beck	주간
7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35+Spezial.17	C. H. Beck	주간
7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4, Heft.36	C. H. Beck	주간
77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1 Hft.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78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1 Hft.16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9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Jahrgang.34 Heft.7	C. H. Beck	월간
80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Jahrgang.34 Heft.8	C. H. Beck	월간
81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33 Heft.17	C. H. Beck	월간
82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22	Verlag C. H. Beck OHG	순간
83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23	Verlag C. H. Beck OHG	순간
84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7 Heft.24	Verlag C. H. Beck OHG	순간
85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8 Heft.3	J. C. B. Mohr	계간
86	Recht der Arbeit Jahrgang.67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87	Recht und Politik Jahrg.50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계간
88	Rechtstheorie Bd.44 Hft.4	Duncker & Humblot . Berlin	계간
89	Recueil Dalloz 2014,N.29+Supplement (Table provisoire)	Dalloz	주간
90	Recueil des Cours No.362(2012)	Martinus Nijhoff Publishers	부정기
91	Recueil des Cours No.363(2012)	Martinus Nijhoff Publishers	부정기
92	Recueil des Cours No.364(2012)	Martinus Nijhoff Publishers	부정기
93	Recueil des Cours No.366(2013)	Martinus Nijhoff Publishers	부정기
94	Recueil des Cours No.367(2013)	Martinus Nijhoff Publishers	부정기
95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4, N.2(4-6)	dalloz	계간
9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4, No.2	Dalloz	계간
9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2014, Nr.2	Dalloz	계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98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éen 2014, Nr.2	EDITIONS DALLOZ	계간
99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4/6 2014(N.2)	EDITIONS DALLOZ	계간
100	Stanford Law Review Vol.66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01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4 Heft.9	Luchterhand	월간
102	The Economist 2014.08.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3	The Economist 2014.09.0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4	The Economist 2014.09.1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05	The John Marshall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Privacy Law Vol.30 No.4 (2014 Summer)	The John Marshall Law School	계간
106	The Modern Law Review Vol.77 No.4	Mordern Law Review Limited	격월간
10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50	NLP IP Company	주간
10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6 No.51	NLP IP Company	주간
10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7 No.1	NLP IP Company	주간
110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7 No.2	NLP IP Company	주간
111	The Supreme Court Review 2013	JSTOR	연간
112	Time 2014년 06월 23일	Time Asia	주간
113	Time 2014년 09월 01일	Time Asia	주간
114	Time 2014년 09월 08일/15일	Time Asia	주간
115	Time 2014년 09월 22일	Time Asia	주간
116	Time 2014년 09월 29일	Time Asia	주간
117	Transportrecht Jahrgang.37 Heft.7/8	Luchterhand	월간
118	U.S News&World Report 2014. 9	U.S News&World Report	연간
119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VRÜ) Jahrg.47 Hft.2	Nomos	계간
120	Versicherungsrecht Jahrg.65 Hft.24	Verlag Versicherungswirtschaft	순간
121	Versicherungsrecht Jahrg.65 Hft.25	Verlag Versicherungswirtschaft	순간

No	서 명	발 간 처	간 기
122	Versicherungsrecht Jahrg.65 Hft.26	Verlag Versicherungswirtschaft	순간
12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34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2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35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2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8 Nr.3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26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4 Hft.9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27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Jahrg.29 Hft.2	C.F.Muller	계간
128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 Jahrg.75 Hft.1	Carl Heymanns	계간
129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 Jahrg.75 Hft.2	Carl Heymanns	계간
130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Bd.133 Hft.3	Helbing & Lichtenhahn	격월간
131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 (ZvglRWiss) Bd.113 Hft.3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32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34+Ewir 16	RWS	주간
133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35	RWS	주간
134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5 Hft.36	RWS	주간
135	Zeup(Zeitschrift für Europäisches Privatrecht) 3/2014	Verlag C. H. Beck OHG	계간